

2020학년도

편입학전형 기본계획

※ 본 <편입학전형 안내>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
추후 발표되는 <모집요강>을 우리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4.



2020학년도 편입학전형 주요 사항

1. 1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변경(일반/학사편입 동일)
 - [2019학년도] 공인영어성적 80% + 전적대학성적 20%
 - ⇒ [2020학년도] 공인영어성적 70% + 전적대학성적 30%
2. 2단계 전형 방법비율 변경(일반/학사편입 동일)
 - [2019학년도] 1단계 성적 70% + 면접 30%
 - ⇒ [2020학년도] 1단계 성적 60% + 면접 40%

2. 공인영어성적 점수 산출방법(일반/학사편입 동일)

TOEFL(IBT)		TOEIC	
취득점수	배점	취득점수	배점
115 이상	100	990	100
76~114	(취득점수 - 76) ×30 ÷ 39 + 70	700~985	(취득점수 - 700) ×30 ÷ 290 + 70
29~75	(취득점수 - 29) ×60 ÷ 47 + 10	400~695	(취득점수 - 400) ×60 ÷ 300 + 10
29 미만	10	400 미만	10
TEPS			
기존 TEPS (2018. 5 이전)		NEW TEPS (2018. 5 이후)	
취득점수	배점	취득점수	배점
927 이상	100	543 이상	100
600~926	(취득점수 - 600) ×30 ÷ 327 + 70	327~542	(취득점수 - 327) ×30 ÷ 216 + 70
334~599	(취득점수 - 334) ×60 ÷ 266 + 10	178~326	(취득점수 - 178) ×60 ÷ 149 + 10
334 미만	10	178 미만	10

3. 전적대학별 성적 반영 방법(일반/학사편입 동일)

구분	반영구분	비고
국내공통 (학점은행제, 독학사 제외)	단일대학	▶ 수료 직전학기 성적까지 반영 예) 2학년 수료 예정자는 2학년 1학기 (하계 계절학기 포함) 성적까지 반영 ▶ 1개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대학 성적 반영
	전적대학 편입학한 경우 학점은행제, 독학사	
해외	해외대학	공인어학성적을 기준으로 비교내신 성적 산출
전적대학의 백분위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		

5. 공인영어성적 인정 응시기간 : 2018.3.1(목) ~ 2019.12.1(일)

1. 전형유형 및 지원자격

가. 일반 편입학

- 1) 정원내외 구분 : 정원내외
- 2) 모집학년 : 3학년
- 3) 지원자격 (고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2 및 제51조)

구 분		지원자격
일반 편입 (정원내)	국내 4년제 이상 대학 (4년제 정규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산업대학, 사이버대학 등)	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는 학기수에 포함하지 않음) 이상 수료한 자 및 2020년 2월 수료예정자 ※ 2학년 수료 :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(4학기) 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함
	국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	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는 학기수에 포함하지 않음) 이상 수료(2020년 2월 이전 수료예정)하고,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/2 이상을 취득(2020년 2월 이전 취득예정)한 자 ※ 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은 2년 이상 등록하고, 졸업기준학점의 2/3 이상을 취득(2020년 2월 이전 취득예정)한 자 ※ 5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기준 학기(학년)의 1/2 이상 수료(예정)하고, 졸업기준 학점의 1/2 이상 취득(2020년 2월 이전 취득예정)한 자
	국내·외 전문대학	졸업자 및 2020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
	학점은행제	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학점취득자로서 ▷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(전문)학사학위 취득자 및 2020년 2월 취득예정자 ※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"(전문)학사학위(수여예정)증명서"를 제출해야 함 ②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※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70학점 이상 취득한 "학점인정증명서"를 제출해야 함
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		
일반 편입 (정원외)	농어촌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편입(정원내)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▷ 농어촌 지역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고교를 졸업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유형 1> : <농어촌지역> 중·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, 재학기간 6년 동안 부·모·지원자 모두가 <농어촌지역>에 거주한 자 ② <유형 2> : <농어촌지역>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, 재학기간 12년 동안 지원자가 <농어촌지역>에 거주한 자 ※ 단, 특수목적고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예술고, 체육고, 마이스터고) 졸업자는 지원 불가

구 분		지원자격
	특성화고교졸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편입(정원내)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▷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※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성화고,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일반고(종합고)를 의미함. ※ 단, 마이스터고, 종합고 “보통과”, 대안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는 지원불가 ▷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우리대학 지원 모집단위 학과(전공)가 동일계열인 자 ※ 단, 동일계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, 특성화고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는 지원가능
	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<p>일반편입(정원내)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	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편입(정원내)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▷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①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동안 시·도 교육감이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③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(※ 단, 종합고 “보통과” 졸업자는 지원 불가) ④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▷ 고교 졸업일 이후 2020년 3월 1일(기준일)까지 다음 산업체에서 통산 3년 이상 근무(영업)하고,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근무(영업) 중인 자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포함) 이상 사업체 ③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(창업·자영업자 포함) ④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종사자(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) ※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경력, 직업군인 및 의무 복무 등의 준경력 재직기간 포함

나. 학사 편입학

- 1) 정원내외 구분 : 정원외
- 2) 모집학년 : 3학년
- 3) 지원자격 (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)

구 분		지원자격
학사 편입 (정원외)	국내 4년제 대학 (4년제 정규대학, 방송 통신대학, 산업대학, 사이버대학 등)	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2020년 2월 이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
	국외 4년제 정규대학	
	국외 3년제 정규대학	3년제 대학(학사학위과정)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2020년 2월 이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
	학점은행제 (독학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학점취득자로 서 학사학위 취득자 및 2020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※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“학사학위(수여예정)증명서”를 제출해야 함
학사편입 (승려)	불교학(승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사편입(일반)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• 대한불교조계종 재적 승려

2.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

가. 모집단위 선정 기준

: 2018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학과 또는 전공별 모집

나. 모집단위별 제한사항

- 1) 경찰사법대학, 사범대학, 예술대학(영화영상학과 제외)은 편입학을 모집하지 않음
- 2) 2020학년도 모집인원 산출 기준에 의거하여 모집가능 인원이 없는 학과 또는 전공의 경우,
2020학년도 편입학 모집에서 제외(「2020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」에서 최종확정)
- 3) 국어국문·문예창작학부, 물리·반도체과학부는 학부로 모집(졸업 시 전공결정)

다. 모집인원 산출 기준

: 추후 교육부에서 공시하는 「2020학년도 편입학전형 기본계획」에 의거하여 산출할 예정임

3. 주요 전형일정(예정)

구 분	일 정
원서접수(인터넷)	2019년 12월
서류제출(우편접수)	2019년 12월
1단계 합격자 발표	2020년 1월
2단계 전형료 납부	2020년 1월
면접고사	2020년 1월
최초합격자 발표	2020년 1월
총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	2020년 2월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4. 전형방법

가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구 분		공인영어성적	전적대학성적	면접고사
일반/학사편입	1단계(5배수)	70%	30%	-
	2단계	1단계 성적 60%		40%

나. 공인영어성적 반영방법

1) 동국대학교 편입학 공인영어성적 점수 산출방법

TOEFL(IBT)		TOEIC	
취득점수	배점	취득점수	배점
115 이상	100	990	100
76~114	(취득점수 - 76) ×30 ÷ 39 + 70	700~985	(취득점수 - 700) ×30 ÷ 290 + 70
29~75	(취득점수 - 29) ×60 ÷ 47 + 10	400~695	(취득점수 - 400) ×60 ÷ 300 + 10
29 미만	10	400 미만	10
TEPS			
기존 TEPS (2018. 5 이전)		NEW TEPS (2018. 5 이후)	
취득점수	배점	취득점수	배점
927 이상	100	543 이상	100
600~926	(취득점수 - 600) ×30 ÷ 327 + 70	327~542	(취득점수 - 327) ×30 ÷ 216 + 70
334~599	(취득점수 - 334) ×60 ÷ 266 + 10	178~326	(취득점수 - 178) ×60 ÷ 149 + 10
334 미만	10	178 미만	10

- ▶ 100점 만점 환산점수에 반영비율(70%)을 적용하여 반영
 - ※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반영(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)
- 2) TOEFL(IBT), TOEIC, TEPS (또는 NEW TEPS)중 우리대학 편입학 공인영어성적 점수 산출방법을 참고하여 지원자에게 유리한 1종류의 성적만 제출
 - ▶ 공인영어성적 인정 응시기간 : 2018. 3. 1(목) ~ 2019. 12. 1(일)
 - ※ 인정 응시기간 이내 시험이라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가능한 성적만 인정
 - ▶ 공인영어성적은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

다. 전적대학성적 반영방법

- 1) 반영방법 : 전적대학 취득 백분위 점수(100점 만점 환산점수)에 반영비율(30%)을 적용하여 반영
- 2) 대학 과정별 반영방법

구분		반영구분	비고
국내공통 (학점은행제, 독학사 제외)	단일대학	단일대학	▶ 수료 직전학기 성적까지 반영 예) 2학년 수료 예정자는 2학년 1학기 (하계 계절학기 포함) 성적까지 반영
	전적대학 편입학한 경우	최종소속대학	▶ 1개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대학 성적 반영
해외	해외대학	공인어학성적을 기준으로 비교내신 성적 산출	
전적대학의 백분위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			

라. 동점자 처리기준

구분		동점자 처리기준
일반/학사편입	1단계	동점자 전원 선발
	2단계	① 공인영어성적 환산점수 상위자 ② 전적대학 백분위 상위자